

등록번호	덕일성유치원-02
등록일자	2022.08.10
결재일자	2022.03.21
공개여부	공 개

운영위원회 회의록

회의명	2022학년도 제1회 덕일성 유치원 운영위원회
회의주관부서	행정실
회의개최일시	2022년 03월 21일 10:30~11:30
회의장소	사무실
참석자명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위원장: 박** • 외부위원: 김**, 이**, 조**, 이**, 이** • 내부위원: 정**, 김**, 장** • 간사: 김** • 서기: 장**

회의진행순서

1. 개회
2. 국민의례
3. 회의안건 상정 및 토의
4. 폐회

상정안건

1. 운영위원회 회칙 사항 전달 및 유치원 규칙 및 운영위원회 규칙 개정안의 심의 · 자문
2. 유치원 교육과정운영 학사 일정에 관한 사항 심의 · 자문
3. 2021학도 세입·세출 결산 심의(안)

회의진행

간사: 운영위원 9명 중 전원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, 제1회 덕일성유치원 운영위원회 개회
유치원장: 인사말
위원장: 성원이 되어 제1회 덕일성 유치원 운영위원회 개의 선언
위원장: 의사일정 운영위원회 회칙 및 협의 사항을 전달 및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, 유치원 규칙 개정, 2021학년도 세입·세출 결산 자문·심의(안)을 상정 합니다.

심의결과

1. 유치원 규칙 및 운영위원회 회칙 협의 사항 전달 및 유치원 규칙 개정안의 심의 · 자문

가. 발언내용

○교사(김**): 자료 참고하여 안건 설명 함
 다음 붙임과 같이 유치원 규칙 및 운영 위원회 회칙의 추가사항 전달

유치원 규칙 및 운영 위원회 회칙 신·구조문 대비표	
2021년 현행	2022년 개정안
유치원 규칙 21조(수업료 등의 면제·감액·반환) <신설>	⑤유치원 원비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. ⑥유아가 설립자를 달리하는 유치원으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수업료를 반환한다. ⑦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(이하 “반환 사유”라 한다.)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를 반환한다. 1.법령에 따라 (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 2.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.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
유치원 규칙 29조(기능) <신설>	⑤ 그 밖에 대통령령 및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<신설>
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칙 제2조(기능) ①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 <변경>	제2조(기능) ① 유치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2. 유치원 교육과정운영 학사일정에 관한 사항

가. 발언내용

○교사(김**): 자료 참고하여 안건 설명 함
 다음 붙임과 같이 덕일성 유치원 2022학년도 운영계획을 참고하여 설명 및 학사운영 일정을 급식지원 230일에

맞추어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

3.2021학년도 덕일성 유치원 세입·세출 회계 결산서(안)

가. 발언내용

○ 교사(김 * *): 사립학교법에 따라 (유치원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 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)의 규정에 의하여 2021학년도 세입·세출 결산 심의(안)을 운영 위원회 심의를 받고자 함.

2021학년도 세입·세출 결산 심의(안)

(단위:원)

구분	덕일성 유치원 회계	비고
예산액	789,016,000	
세입결산액	789,014,066	
세출결산액	781,697,346	
세계잉여금	7,316,720	

나. 잉여금 처리상황

(단위:원)

세계잉여금 (A)	이 월 금(B)			순세계잉여금 (C=A-B)	비고
	명시이월	사고이월	계속비이월		
7,316,720	0	0	0	7,316,720	

5. 기타 첨부 서류

가. 2022년 덕일성 유치원 규칙 및 운영위원회 회칙1부.

나. 2022학년도 덕일성 유치원 운영계획서1부

다. 2021학년도 덕일성 유치원 세입·세출 회계 결산서(안)1부

○ 질의사항 없음

다. 결정사항: 원안 가결(찬성 9, 반대 0표)

위원장: 반대의견 없이 상정 원안대로 가결 선포.

위원장: 제1회 덕일성 유치원 운영위원회 임시회 폐회 선포

비고

※ 조례 제15조에 의거 회의 일시, 장소, 참석자, 안건, 발언요지, 결정사항 등을 기록